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222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정우성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49515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20. 'C는 D에 40,322,100원과 그 중31,442,531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관련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13. 확정되었다.

나. D는 2013. 12. 1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8. 4.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0. 2. 19.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의 부(父)인 F은 2019. 10. 16.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있으며,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피고와 자(子)인 G, C, H이 있다.

라. 피고는 2019. 10. 16. G, C, H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를 하고, 2019. 11. 19.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0.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자동차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속 지분(2/9)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상속포기신고만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와 동일하고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약과 상속의 포기는 법률상 의미, 방식 및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한 것이 상속의 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룩한 재산으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고,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준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산정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행위가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의 목적인 근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이 정당한 거래행위에 기초하였다는 사정은 수익자에게 수익자의 선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한편,채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C의 모친이고, 2004. 9. 21.부터 남편인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여 온 점, C는 2008. 4. 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여러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도 한 점, 관련 지급명령은 당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송달되었는데, 망인이 2012. 4. 13. 관련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4.3. 6. 관련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기도 한 점, 채권자취소권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악의 즉,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아들인 C의 채무 관계와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호 84.9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 9194.7㎡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194.7 분지 33.93